

개정법률 소개

『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』 등 6개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시

주요내용

- ▷ 소방신기술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이용한 급기가압시스템 도입
 - ▷ 소화활동장비의 사용전압 규격에 맞는 비상콘센트설비 합리적 개선
 - ▷ 가스계소화설비(이산화탄소, 할로겐화합물, 청정소화약제)의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 사용토록 개선
- 〈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〉
-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승강장에 한함)
- 〈비상콘센트 및 도로터널〉
- 소방장비의 사용전압에 맞는 비상콘센트설비 전원회로 기준을 개선
 - (비상콘센트) 380V 및 220V → 220V,
 - (도로터널) 100V 또는 220V → 220V
- 〈이산화탄소 등 가스계소화설비 3건〉
-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(CD)을 사용하도록 함

□ 소방방재청(청장 남상호)은 “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등 6개 화재안전기준”을 9월 3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.

□ 주요 개정사항으로는

- “**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**” 는 제연구역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한하여 소방신기술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통한 급기가압시스템을 도입 급기풍도의 다양성 확보에 따라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방식의 선택의 폭이 늘어났으며,
 - (현행) 급기풍도는 전용수직풍도 사용
 - (개정) 전용수직풍도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사용(승강장에 한함)
- “**비상콘센트 및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**” 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시 사용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비상콘센트설비의 사용전압기준을 소화활동장비의 사용전압에 맞게 220V로 현실화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고,
 - * 전원회로 기준 개선
 - (비상콘센트) 380V 및 220V → 220V, (도로터널) 100V 또는 220V → 220V
- “**가스계소화설비(이산화탄소, 할로젠화합물, 청정소화약제)**” 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(CD)을 사용하도록 개선하였다.
 - (현행) 성능인증 설계프로그램 사용 의무
 - (개정) 수동 계산 또는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(CD) 사용

□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성능이 검증된 소방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선진적 화재안전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, 불합리한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붙임 : 국가화재안전기준 6개 고시 개정사항 신규조문 대비표 1부.

□ 불 입

< 주요내용 >

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

-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 승강장에 대하여는(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제외)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제5호 신설)

□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 성능인증제를 통하여 성능인증됨
 -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풍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이용하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급기)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6조(급기) ----- ----- ---. 1. ~ 4. (생략) 5. <u>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
②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

-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현재 사용 중인 개선된 소방장비의 사용 전압 규격에 맞추기 위하여 기존에 3상교류 380 V인 것과 단상교류 220 V인 것 두 가지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 단일 화합(안 제4조제2항제1호)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전원 및 콘센트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(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380V인 것과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, 그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의 경우 3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.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</p> <p>2.~ 8. (생 략)</p>	<p>제4조(전원 및 콘센트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, 그 공급용량은 1.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</p> <p>2.~ 8. (생 략)</p>

③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

-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현재 사용 중인 개선된 소방장비의 사용 전압 규격 및 「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100호)에 맞추기 위하여 기존 단상교류 100 V 또는 220 V인 것 두 가지 중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 단일 화합(안 제12조제1호)

「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 6.4 비상콘센트설비
6.4.2 기기사양
⇒ (1)터널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설비는 구조활동이나 소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설하며,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공급용량은 1.5kVA 이상으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비상콘센트설비) 비상콘센트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인 것으로서, 그 공급용량은 1.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12조(비상콘센트설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,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

-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은 성능인증 소방용품이므로 설계자의 재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퓨터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「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도록 함(안 제18조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설계프로그램) <u>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8조(설계프로그램) <u>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「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

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

-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은 성능인증 소방용품이므로 설계자의 재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퓨터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「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

합한 것으로 설계하도록 함(안 제15조)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설계프로그램) <u>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.</u>	제15조(설계프로그램) <u>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「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.</u>

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

-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은 성능인증 소방용품이므로 설계자의 재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퓨터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「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도록 함(안 제18조)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설계프로그램) <u>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.</u>	제18조(설계프로그램) <u>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「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.</u>